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-

2025. 1.



공정거래위원회

순 서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	1
II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	4
1.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	4
2.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	6
3.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	9
4.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	11
5.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	13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14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

◆ 역동적 시장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법집행 및 정책 추진

①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장환경 조성

- 주력산업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·독점력 남용·불공정 행위 시정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

담 합	독점력 남용·불공정 행위
[철 강] 철근 입찰담합(과징금 2,565억원)	[플랫폼]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 조작(과징금 1,628억원)
[자동차]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(과징금 290억원)	택시호출앱 콜 몰아주기·차단(과징금 422억원)
[의 료] 예방접종 백신 입찰담합(과징금 407억원)	[앱마켓] 경쟁 사업자 출시 방해(과징금 422억원)
[생 활] 빌트인가구 입찰담합(과징금 931억원)	[반도체] 장기공급계약 강제(과징금 187억원)
	[건 설]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(과징금 705억원)

- 시장진입·사업활동·혁신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 - * ▲렌터카카세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, ▲알뜰폰 유통경쟁 촉진, ▲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
- 시정방안 제출제 신설, 신고면제 확대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효율화

②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강화

-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 보장
- 가맹점주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필수품목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
-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 * 배달앱·숙박앱

③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

- 디지털·신유형 거래 소비자 보호 및 합리적 소비기반 마련
 - * ▲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규율, ▲해외직구 위해물품 피해 차단, ▲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등
- 국민 일상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강화
 - * ▲게임·통신·교육 부당광고, ▲아이돌굿즈 청약철회 방해, ▲결혼쇼핑·여가업 불공정약관 등 시정

④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

- 동일인 기준 명확화·친족범위 축소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
-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및 기업 공시부담 완화

< 정부 전반기 주요 법집행 및 정책 성과 >

공정거래 질서 확립	민생경제 안정화	효율적 사건처리
▶ 시정조치 건수: 606건 ▶ 경고이상 건수: 3,362건 ▶ 과징금 부과: 1조 2,033억원	▶ 10만여개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대금 22조원 조기지급 ▶ 분쟁조정금액 3천2백억원 지급	▶ 사건 처리기간 20% 단축 (의결사건기준, '22년대비 '23·'24년) ▶ 직권인지 사건 수 51% 증가

II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추진 여건

□ (경제상황)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상황, 민생경제 회복 필요

- 누적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내수 개선이 지연되고,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 불안정 지속

* '25년 경제성장률 전망: 2.1%(OECD), 2.0%(IMF·KDI·ADB), 1.9%(한국은행), 1.8%(기재부) 등

-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·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,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담합,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 상존

□ (산업환경) 시장변화에 맞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중요

- 주력산업 성장 둔화, 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의 구조 전환 등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동력 발굴 시급

- 디지털 경제 시대에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* 방지 및 시장 공정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 요구 증가

* (경쟁 제한) 자사우대 및 최혜대우 요구, (입점업체 피해) 대금 미지급 및 유용 등

- 대·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, 소상공인 자생력 저하 상황에서 균형적 경제 발전을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필요

□ (정책여건) 공정거래정책 체감도 제고 및 신속한 현장안착 지원

- 국민들이 민생경제 회복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속도감 있는 공정거래정책 추진 필요

- 개선한 제도들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·소통 활성화

☞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 시장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

2 추진 방향

목표

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

핵심 추진 과제

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

- ▶ 하도급·유통 분야 중소·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
- ▶ 가맹·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
- ▶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

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

- ▶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
- ▶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 확대
- ▶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

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

- ▶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
- ▶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
- ▶ 신유형·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

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

- ▶ 부당 내부거래 감시·제재 강화
- ▶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
- ▶ 시장 자율감시 기능 확대 및 기업 부담 완화

추진 기반

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

- ▶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
- ▶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확대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1.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

◆ 고물가와 내수부진에 취약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고, 불공정 관행 및 경영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

가. 하도급·유통 분야 중소·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

□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추진^{25上}

- ▲지급보증* 및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, ▲일정분야의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 등 대금 미지급·지급불능 대비 보호장치 강화(하도급법·시행령 개정)

* 지급주기별 지급보증 수준의 적정성 재검토 및 보증의무 면제사유 축소 등

- ▲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 제한, ▲불합리한 유보금 약정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(하도급법·고시 개정)

- 고질적 문제인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(私法)상 효력을 무효화하여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(하도급법 개정)

* (現) 행정제재 후에도 부당특약 사법상 유효 → (改) 부당특약 의무 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可

- ▲납품단가 연동제 회피 탈법행위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, ▲연동제 현장 안착 유도(하위규정 정비·컨설팅 확대 등)

□ 유통 분야 납품대금의 적시 지급 유도 및 유용 방지

-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▲대금 정산기한 준수, ▲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과(대규모유통업법 개정)^{25上}

- 직매입·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및 단축 추진(대규모유통업법 개정)

* 주요 유통업태별 정산 절차·기간 실태조사 후, 업태별 특성, 매입형태 간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기한 검토

- 거래관행 개선도가 낮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,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 적극 시정^{25上}

* '24년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 대금 미·지연지급 경험률: 22.9%(전년 대비 12.5%p 상승)

나. 가맹·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

□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

- ▲정보공개서 공시제^{*}를 도입^{*}하여 창업희망자가 필요 정보를 적시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, ▲1+1제도 확대^{**}로 창업 안정성 강화(가맹사업법·시행령 개정)

^{*} (現) 등록기관 심사 전 정보공개서 제공 不可 → (改) 심사 없이 정보공개서 신속 공시(사후 점검)

^{**} (現) 가맹사업 개시 전 해당업종 직영점 1개 이상, 1년 이상 운영 → (改) 업종 변경 시에도 확대 적용

- ▲가맹점주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하는 고질적 병폐를 집중 감시^{*}하고, ▲필수품목 갑질 근절을 위해 既도입한 제도의 현장안착 실태점검^{**}[\[25\]](#)

^{*} 납품대금 현금결제 강요 관련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용, 배달·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점검시정

^{**}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 현황·거래조건 협의 실태 중점 점검, 지자체·공정거래조정원 협업을 통한 상시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등 교육·홍보 강화

□ 대리점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

- ▲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보장^{*}하여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, ▲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 통지하도록 절차 엄격화(대리점법 개정)

^{*}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에 명시하고 단체 구성·활동 시 불이익 제공 금지조항 신설

- 유제품·타이어 대리점주 대상 비용전가·경영간섭, 출판사·대형·중소 서점 간 거래거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관행 점검^[25]

다.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

□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 시정 및 부담 경감

- ▲배달 플랫폼-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마련된 상생방안^{*} 시행 및 ▲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, 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 시정^[25]

^{*} 수수료 부담 완화(9.8%→2.0~7.8% 등), 입점업체 부담항목(중개·결제수수료, 배달비) 영수증 표기 등[배달플랫폼-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방안 既 발표, '24.11.14]

- 소상공인 부담을 야기하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단축^{*} 시행^[25]

^{*} 수수료 인하(5~14%→5~8%), 정산주기 단축(약 60일→30일)[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既 발표, '24.12.26]

□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

- 자영업자 매장 운영 보조수단으로 도입·운영이 급증하고 있는 ‘식당테크’*에 대한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실시

* 예약·줄서기 앱, 원격주문 앱,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 운영을 돕는 신기술

-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‘노쇼’ 관련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위약금 기준 현실화 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^{25.1}
-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▲표준약관 제정, ▲민·관 TF를 통한 사기 업체 수사의뢰, ▲교육·홍보 등 다각적 대응

2.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

◆ 시장 혁신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고,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추진

가.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

□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 강화

- 4대 분야(건강·안전, 의식주, 건설·중간재, 공공·조달 등) 담합 집중 점검

< 4대 중점 점검 분야 >

건강·안전	▶ 혈액·조직 진단검사, 생활폐기물 처리, 건축물 감리 등
의식주	▶ 돼지고기, 시스템 가구, 교복 등
건설·중간재	▶ 건물 바닥재·저수조, 아연도금 철선, 스테인리스 강선, 금속가공 윤활유 등
공공·조달	▶ 국고채 입찰, 공공기관 발주 기자재 등

- 신유형 담합(AI 활용 담합, 친환경을 내세운 담합, 정보교환 담합 등) 사례·법리·해외동향에 대한 심층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
- 입찰정보 누락방지를 위한 연계기관과의 시스템 정합성 제고 추진, 평가지표 보완* 등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BRIAS) 개선

* 연계기관 확대, 입찰방식 변화, 최근 심결례 등 반영

□ 핵심산업에서 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 근절

- 통신·자동차·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 불공정 관행* 점검·시정

* ▲통신·자동차 판매 대리점 불이익제공·경영간섭, ▲반도체 분야 재판매가격유지 등

- 혁신 중소·벤처기업 대상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기술유용 감시 강화

<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기술유용 중점 점검 분야·내용 >

첨단전략·소프트웨어·콘텐츠	▶ 서면 미발급, 대금 미·지연지급, 검사기준 미통지 등
산업기계(반도체 장비·농기계)	▶ 기술자료 유용, 기술자료 요구·수령 시 절차 위반 등

- ▲집행실적이 미흡한 불공정거래 유형의 실효성 제고, ▲거래유형 다양화에 대응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규정 구체화(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)[\[25.1\]](#)

나.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 확대

□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구조 개선

- 친환경·저탄소, 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

* (예) 재생에너지 생산규제 개선 등

- 장기간의 독과점 고착화로 효율성이 저하된 분야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시장분석 실시

* (예) 금융거래 서비스 시장 경쟁촉진 방안 검토 등

□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효율화

-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은 심층심사하되, 사업재편·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심사

* (심층심사) 반도체·OTT M&A 심사 시 이해관계자 의견조회, 전문가 자문, 경제분석 등 실시
(신속심사) 사업재편·신사업 M&A 등의 경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 지원

- 최근 기업결합 관련 시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

* (예) 새로운 유형(전통적 기업 인수가 아닌 핵심인력 영입 및 라이선스 확보 등)에 대한 효과적 심사 방안, 시장 경계 모호화에 따른 시장획정 선진화 방안 등

-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·소비자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
 - ▲데이터 분야(데이터 수집·이동 관련 상호운용성 강화 등)의 경쟁 촉진·소비자 보호 방안, ▲구독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이슈와 개선방안 등

다.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

-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제도기반 마련
 -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反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* 추진(공정거래법 개정)
 - * 4대 반경쟁행위 금지, 6대 서비스 분야(중개·검색·SNS·동영상·OS·광고) 시장구조·경쟁현황 등의 선제적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등
-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·소비자 기만행위 방지
 -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형·버티컬·모바일 플랫폼의 경쟁사 진입·사업 방해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·시정

< 플랫폼 불공정 관행 등 중점 점검 분야·내용 >

구독형 플랫폼	▶ 음원 스트리밍 끼워팔기, 멤버십 끼워팔기 등
버티컬 플랫폼	▶ 숙박·인테리어·패션 플랫폼 불공정거래(할인쿠폰 판매·운영 제한, 他플랫폼 입점제한 등),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(부당 면책조항 등) 등
모바일 플랫폼	▶ 앱마켓, 모바일 브라우저 관련 거래강제 등

-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*에 대한 감시 강화^[25]
 - * 실제 판매되지 않은 가격의 정가 표시, 사이버몰 운영자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등
- 전자상거래 시장환경 변화(플랫폼 거래 활성화, 기업·피해 규모 증가 등)에 따른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(전자상거래법 개정)
 - *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, 과태료 수준 상향 등

3.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

◆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고, 디지털·신유행·글로벌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

가.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

□ (청년기) 결혼·출산·육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및 소비자 보호

○ ▲주요 결혼식장·준비대행업체 가격 자율공개 유도, ▲소비자원(참가격)을 통한 지역별 비교정보 공개 등 결혼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²⁵⁾

○ 출산·육아 분야의 피해 유발 불공정행위* 점검 및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, 청소년 등 계층별로 특화된 소비자 교육 실시

* ▲육아용품 부당광고, ▲산모·영유아 건강기능식품 불법 리베이트 등

□ (중년기) 일상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

○ 문화콘텐츠, 여행,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형별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

< 일상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중점 점검 분야내용 >

문화콘텐츠	▶ 공연 유료 멤버십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점검
여행	▶ 항공사 결합 후 '마일리지 불리한 변경 및 운임 인상'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▶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(여행 출발 전 계약해지 요건 합리화 등)
건강관리	▶ 헬스장 피해실태·불공정관행 조사, 표준약관 개정(휴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 등) ▶ 취약지역 의료생협 인가기준 완화(설립동의자 수, 출자금액 등)

□ (노년기) 상조분야 등 고령층 소비자 대상 안전망 확충

○ 고령층 소비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추진

* (예) 교통약자 수송 수단 확대, 노약자 상대 생활서비스 제공 개선 등

○ 상조 정보 조회(가입정보·납입금액·보상가능금액 등), 피해보상 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

○ 상조업체의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(할부거래법 개정)* 및 선수금 관련 보전비율 준수 의무·통지 의무 이행 여부 중점 점검

* (예) 특수관계인 간 대여·투자 등 불건전 자산운용 제한, 소비자 피해보상 해태행위 제재

나.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

□ 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권익 강화

-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력이 큰 이용·구매후기 관련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투명성 강화(전자상거래법 개정)
 - * 이용·구매후기 조작 금지, 일정 기간 보유의무 부과, 게시기간·삭제기준 정보공개 의무화
- 소비자 기만 **눈속임 상술**(다크패턴) 방지를 위해 **금지사항 구체화**(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), **문답서 배포, 범위반 모니터링**

□ 디지털 소비자 거래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합리화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**C2C 플랫폼의 정보 수집범위 조정 및 분쟁해결 역할 확대**(분쟁발생 시 플랫폼 확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등; 전자상거래법 개정)
- OTT·배달앱 등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**중도해지권**을 보장하면서 **합리적 환불**이 이뤄지도록 **환불기준 가이드라인 마련**(가이드라인 제정)

다. 신유형·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

□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확대

- 신유형 **상품권**(모바일 상품권 등) 관련 ▲**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비율 확대**, ▲**발행사의 양도·환불 제한 이용약관 점검**[\[25\]](#)
- 인공지능 기술과 무관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거짓·과장되게 광고하는 ‘**AI 워싱**’ 행위 감시 및 실태조사 추진
- 팝업스토어, 웨딩·베이비페어 등 **한시적 전시장 거래**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(특수판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)

* 방문판매업 신고 의무, 청약철회 방법 설명 의무, 기만행위 금지를 지침에 명시

□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위해 방지[\[25\]](#)

-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**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**(전자상거래법 개정)
- 해외 플랫폼을 통한 **위해·미인증 제품 유통**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
 - * ▲**자율안전협약**(‘24.5월 체결)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, ▲**해외 위해물품 협의체 참여기관 확대**, ▲**‘소비자24’ 정보제공 확대**(위해물품 검색기능 제공, 메뉴 개편)

4.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

- ◆ 중소기업 주력업종 및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, 대기업집단 시책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화

가. 부당 내부거래 감시·제재 강화

□ 중소기업 주력업종 및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 엄정 대응

- 외식업·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 업종 및 부동산·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적극 감시
- 시장 퇴출 위기의 부실 계열사, 능력 미검증 신생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중점 점검

□ 부당 내부거래 사건 감시·적발시스템 강화²⁵⁾

- 범위반 징후가 포착(지분구조·내부거래규모·매출액 변동상황 등 종합 분석)된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
 - * 기업집단포털(eGroup)을 활용한 '이상징후 탐지 시스템' 구축·운영 등
- 복잡하게 진화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관리·활용*, 유관기관(국세청·한국은행 등) 정보공유·협의 활성화
 - * 정상가격 산정, 시장획정, 경쟁제한성 등 법률·회계상 쟁점에 대한 자문 및 심층 분석

□ 규제 회피 방지 및 실효성 강화

-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부당 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 방안 마련(공정거래법 개정)
 - * (現) 시정조치·형사처벌만 가능(과징금 부과 不可) → (改) 과징금 부과
- 부당 내부거래 행위의 중대성·실질에 비례하도록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범위반 억지력 강화(공정거래법시행령·과징금고시 개정)
 - * (예) 현행 방식으로 지원금액 산출이 곤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의 과징금 산정 개선

나.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

□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

- 경제규모 성장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GDP의 0.5%)과의 정합성을 고려,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(공정거래법 개정)^[25]
-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나 계열사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등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 확대(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)
 - * (現)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제외 → (改) ▲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, ▲사외이사 지배 비영리법인(선임 전후), ▲사외이사에 준하는 비영리법인 임원 지배회사비영리법인(선임 전후)도 제외

□ 벤처기업 성장촉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

-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의 적절성 검토 및 기업부담·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의 제도개선 추진
 - * 부처 협업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(~'25.上 기재부 공동 연구용역)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
- 대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·투자가 활성화되도록 CVC 규제완화(공정거래법 개정)^[25] * CVC 외부출자(40→50%) 및 해외투자(20→30%) 상한 확대

다. 시장 자율감시 기능 확대 및 기업 부담 완화

□ 공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밀착형 제도 개선

-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성·운영하여 공시 정보 효용성 제고 및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마련·시행
- 투자협회,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정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방안(공시 관련 중요 제도설명 추가 등) 마련·시행

□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부담 경감^[25]

-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1차 자료 제출 및 계열편입·제외, 독립경영 신고 창구를 기업집단포털(eGroup)로 일원화하고 진행상황 공개
-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, 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 면제,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방식 도입 등 불필요한 부담 해소

5.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

◆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

가.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

□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·투명성 강화

- 재발방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습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 추진(과징금 고시 개정)
- 국민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등의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 범위·기준 명확화(의결 공개 가이드라인 제정)

□ 자율적 법준수 문화 확산 및 사건처리 절차 효율화

-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(CP)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(인센티브 추가 발굴, 평가위원 확충, 평가지표 개선 등; CP고시 개정)
- ▲사건·민원처리·심의 업무에 AI 기술 적용 추진, ▲디지털 사건자료 수집·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

나.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확대

□ 신속·효과적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정비

-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규정 통합 및 조정절차 효율화(간이조정절차, 감정·자문제도 도입 등)를 위한 입법 추진(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^{25.1})
- 쏠분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‘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’ 신설(공정거래조정원)

□ 쉽고 빠른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강화

-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 확대* 및 공정위 보유 자료의 법원 제출 의무 도입**

* (現) 공정거래법·하도급법에만 규정 → (改) 가맹사업법·대규모유통업법·대리점법으로 확대

** 당사자 자료제출 명령제로 확보 불가능한 자료의 제출의무 도입(영업비밀 보호 장치 有,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·가맹사업법·대규모유통업법·대리점법)

- 소비자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[(現)소비자원 내규 → (改)소비자기본법 규정]
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

1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

■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

- 지급보증 및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
-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
- 제3자 압류 제한,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 금지



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금 신속 지급·유용 방지



20일 이내 대금정산



판매대금 50% 이상
별도관리

■ 가맹·대리점주 보호 강화

- '가맹 정보공개서 공시제' 도입
-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



민생경제 회복
신성장 동력 창출



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

■ 4대분야 담합 집중 점검·시정



건강·안전



의식주



건설·중간재



공공·조달

■ 혁신 중소·벤처기업 대상 불공정관행 근절



핵심 주력 산업(통신, 자동차, 반도체)



첨단 전략 산업

■ 플랫폼 기업 감시 강화

구독형·버티컬·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
집중 점검·시정



3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

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

■ (청년) 결혼·출산·육아 정보제공 확대 및 불공정 행위 감시



결혼준비 가격정보
제공확대



산모·육아용품
허위광고 등 시정

■ (중년) 일상 밀접분야 피해 방지

- 문화콘텐츠, 여행, 건강관리 등 소비자피해 실태점검
- 이용·구매후기 관리 의무 강화, 모바일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



■ (노년) 고령층 소비자 안전망 확충

- 상조 정보 조회, 피해보상 관련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
- 상조업체 부실화 방지·책임경영 유도
- 고령층 소비자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(교통약자 수송수단 확대, 노약자 상대 생활 서비스 제공 개선 등)



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

■ 중소기업 주력업종·민생분야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



외식·건물관리업



부동산·의료



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



- 공시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
- CVC 외부출자(40→50%)· 해외투자(20→30%) 상한 확대

■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·기업 부담 완화

- 공시제도 현장밀착형 제도 개선
-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제출 부담 경감

